

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
(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10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11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11. 15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(안)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설치근거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나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

4. 2024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 개요

- 금천구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총 15개¹⁾를 관리하고 있으며,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7개임.
- 2024년도 기금 총 조성규모는 54,595,956천원임.
 - 2024년도 말 조성액 : 39,576,318천원
 - 용자금 미회수채권 : 15,019,638천원

1) 법정업무 7개(고향사랑, 자활, 양성평등, 통합재정안정화, 재난관리, 옥외광고발전, 식품진흥), 법정재량 7개(노인복지, 주거안정, 도로굴착, 중소기업육성, 남북교류협력,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,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), 구 자체 1개(청년미래)

5.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개별기금별 운용계획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2023년도말 조성액 ㉠	2024년도 기금운용계획		2024년도말 조성액 ㉡=㉠+㉢-㉣	증 감 ㉤=㉡-㉠
		수입 ㉢	지출 ㉣		
합 계	33,765,976	5,821,260	6,315,690	33,271,546	-494,430
남북교류협력기금	203,812	4,000	53,600	154,212	-49,600
고향사랑기금	0	31,990	0	31,990	31,990
재난관리기금	5,148,234	1,231,484	810,000	5,569,718	421,484
통합재정안정화	20,535,857	745,451	0	21,281,308	745,451
중소기업육성기금	4,937,487	3,644,820	5,002,560	3,579,747	-1,357,740
청년미래기금	2,082,327	92,750	155,400	2,019,677	-62,650
식품진흥기금	858,259	70,765	294,130	634,894	-223,365

6.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

가. 연도말 기금 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2023년도 말 조성액 ㉠	2024년도 조성계획			2024년도 말 조성액 ㉡=㉠+㉢-㉣	비고
		수입 ㉢	지출 ㉣	증감 ㉤=㉢-㉣		
남북교류협력기금	203,812	4,000	53,600	-49,600	154,212	

나. 기금 총 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2024년도 말 조성액 ㉠	융자금 미회수 채권 ㉡	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㉢	총 조성규모 ㉣=㉠+㉡-㉢
남북교류협력기금	154,212	0	0	154,212

다. 자금 운용 계획

○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수입액	전년도 수입액	증 감
계	4,000	1,995	2,005
이자수입	4,000	1,995	2,005

○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지출액	전년도 지출액	증 감
계	53,600	1,400	52,200
위원회 참석수당	1,800	1,400	400
평화통일 교육사업 행사운영비	50,000	0	50,000
시책추진업무추진비	1,000	0	1,000
평화통일 참가자 식비	800	0	800

6. 검토의견

-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금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를 근거로 설치되었음
-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
수입내역은 이자수입 총 4,000천원이며,
지출내역은
위원회 참석수당 1,800천원
평화통일 교육사업 행사운영비 50,000천원

시책추진업무추진비 1,000천원
평화통일 참가자 식비 800천원
총 53,600천원입니다.

- 2024년도 기금사업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금확보이며 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생각되며, 향후 제반사업의 추진에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붙임 : 관련법령 1부. 끝.
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1. 3. 9.] [법률 제17564호, 2020. 12. 8., 일부개정]

제24조의2(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·협력의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 교류·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·협력을 증진하고, 관련 정책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.

③ 제2항에 따른 정책협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0. 12. 8.]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41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기금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

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
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<개정 2015. 7. 24., 2021. 1. 12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
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
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
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
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
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

(제정) 2019.07.19 조례 제1033호

(일부개정) 2023.10.12 조례 제1379호

제3조(기금의 설치 및 조성) 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
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기금(이하
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구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구와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북한의 재해·재난 및 기근·질병 등에 대한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
2.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3.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

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·운용한다.

②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(제1033호, 2019.7.19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1371호, 2023.10.12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